

고용노동행정, 7.1.부터 이렇게 바뀐다

7.1.부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 20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제 등 시행

7.1.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다. 지난 '97.3.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제정된 이후 3차례나 미루어 오다가 14년 만에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단체교섭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거나, 교섭대표가 없어 사용자가 교섭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 간 자율 → 과반수 노동조합 → 공동교섭대표단' 순으로 단계적으로 교섭대표가 정해진다.

또한, '04.7.1.1,0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된 주 40시간제가 올 7.1.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로써 34만개 사업장, 287만 명 근로자가 새롭게 주 40시간제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3년간 한시적으로 1주당 16시간 연장근로 가능 등 근로시간·휴가 관련 제도들도 변경된다.

▶ **연장근로 할증률도 최초 4시간까지는 25%로 하향(4시간 이후는 50%)**

다만, 주 40시간제 하에서도 반드시 주 5일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주 6일·주 5일·주 4일 근무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7.1.부터 공공과 민간의 일자리 정보를 워크넷(www.work.go.kr)에서 같이 볼 수 있게 된다. 워크넷과 민간 취업포탈 대표 3개사(잡코리아, 사람인, 커리어) 및 수도권 자치단체(서울, 경기, 인천)의 일자리 정보가 연계되어 검색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워크넷에서 볼 수 있는 일평균 구인정보가 10만건, 24만명에서 20만건, 50만명으로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 20년 만에 통합하고 알기 쉽게 정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부령)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부령)이 통합되고,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기준 보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부령)이 7월 6일(수) 제정·시행된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동 규칙은 '90.7월 안전기준과 보건기준이 분리 제정·운영되어 온 지 20여 년 만에 통합되는 것으로 그 동안 두 규칙이 안전규칙과 보건규칙으로 분리 운영되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기준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안전기준은 산업현장에서 달라진 작업 여건을 반영하였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령체계 정비사항으로는

- 전체 조문 체계를 제1편 총칙, 제2편 안전기준, 제3편 보건기준으로 구분하여 안전기준 334개 조문, 보건기준 251개 조문 등 총 670개 조문으로 구성하였고(종전은 806개 조문)
- 유해·위험요인별로 각 개별조항에서 각각 규정하던 유사 규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개 규정으로 통합하였다.
- ※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출입금지, 작업계획서 작성, 양중기 등의 신호, 방호장치의 조정, 과부하의 제한 규정 등

▶ 안전기준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 '09.1월부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가 시행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경우 전도방지과 방호장치 정상 작동 조정 등의 조치의무를 신설하고
- 조선업, 건설업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고소작업대”에 의한 협착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호가드 설치, 정격하중 표시 등의 안전조치를 추가했으며
- 도장부스 등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 건(gun)을 사용하여 인화성 액체로 세척·도장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종전의 환기조치 외에 전기기기 외부 설치, 조명등 밀봉 등 화재·폭발 예방 조치를 하도록 보완하였다.

산업보건 주요뉴스

- 또한, 대형 내동창고 등 환기가 불충분하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 등의 위험장소에서 용접 작업을 할 때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꽃, 불티 등에 대한 비산 방지, 소화기구 비치, 환기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 그 밖에 건설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시스템 비계”, 강폼 등의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에 대한 안전기준과 전기작업 위험방지 규정 정비, 안전난간 설치기준, 추락방지 조치, 이동식 비계에 대한 안전기준 등을 보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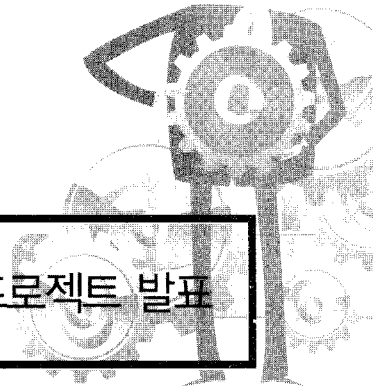
※ 세부개정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최근 제·개정 법령)과 정보마당(정책자료)을 참조

원고를 보내주세요

월간 「산업보건」은 여러분의 관심 속에 산업보건의 발전과 홍보에 일익을 담당하는 전문지로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산업보건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는 월간 「산업보건」에 많은 투고와 성원을 기다리며 다음과 같이 원고를 모집합니다.

- 투고 부문 : 산업보건에 관한 학술논문 및 조사연구 보고
산업보건 사례
산업보건관련 자료
- 원고 송부 : e-mail : pr@kiha21.or.kr
우편 :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490-32
대한산업보건협회 월간 「산업보건」담당자 앞
- 문의 : e-mail : pr@kiha21.or.kr / TEL : (02) 2046-0531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성명, 소속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를 알려주십시오.



고용노동부, 서비스업 Life-long 안전보건 프로젝트 발표

서비스업 근로자와 사업주 전 생애에 걸쳐 “맞춤 안전·보건 지원” 추진

고용노동부는 6.10(금) 14:00 제5차 「안심일터 중앙추진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서비스업 Life-long 안전보건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본 대책은 근로자의 직업생애, 사업주의 경영생애의 단계별로 유효한 접점에 따라 업무연계와 협업을 통해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발굴·매칭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배움단계” → “입직·창업단계” → “근무·사업단계” → “생활 수 단계”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안전·보건교육의 확산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마련되었다.

▶ 그 주요 내용은,

- (배움단계) 예비 근로자의 직업소개, 직업훈련 과정에서 해당 직업의 내용과 더불어 관련된 안전보건 수칙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일환으로 금년 4월부터 요양보호사, 간병인, 청소 등 관련 안전보건 교육을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과정에 포함, 시행하고 있다.
- (입직·창업단계) 프랜차이즈업체 등 각종 창업교육에 안전보건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 개시 단계(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시)부터 관련 업종의 안전수칙이 보급된다.
- (근무·사업단계) 업종을 대표하는 직능단체가 스스로 안전보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택배·퀵서비스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안전수칙도 개발·보급한다.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건강관리 가이드도 연내 마련된다.
- (생활 수 단계) “서비스재해 Zero 10-10 수칙”을 마련하고, 계절·날씨 변화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예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며, 맞춤형 안전보건 자료를 지속 개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동 대책을 확정하고, 앞으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TF 구성 등을 통해 협의하고 매월 진행상황을 평가하는 등 사업을 구체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